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8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고, 불교문화의 전시·체험·교육을 위해 조성된 신라불교초전지가 불교 역사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명칭을 변경하고,
- 나. 이용시간 및 이용료 조정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명칭 변경(제명, 안 제1조, 제2조, 제24조 및 별표 3, 별지 서식)
- 당초: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, 스토리텔링관
 - 개정: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, 신라불교초전기념관
- 나. 시설위치 도로명 주소로 변경(안 제3조)
-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389-46
- 다.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6조)
- 당초: 초전지를 관리하는 부서장
 - 개정: 초전지를 관리하는 주관 국장(실장)
- 라. 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(안 별표 1)
- 마. 이용료 감면율 조정(안 별표 2)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도로명주소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신라불교문화초전지”를 “신라불교초전지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””를 ““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”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신라불교초전기념관

제3조 중 “도개리 320번지”를 “도개다곡길 389-46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단서 중 “신라불교문화초전지”를 각각 “신라불교초전지”로 한다.

제24조 중 “신라불교문화초전지”를 “신라불교초전지”로 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부서장”을 “주관 국장(실장)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이용시간 및 이용료

(제5조, 제8조 관련)

□ 이용시간

구분	이용시간	이용기준	비고
전통가옥체험관	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	1동 1박	
불교문화체험관 (생활관, 사찰음식체험관)	당일 14:00 ~ 다음 날 11:00	개인/1박	
		단체/1박	최대 30명
교육관	09:00 ~ 20:00	1동 4시간	대관
신라불교초전기념관, 전시가옥	하절기(3월~10월) : 09:00~18:00 동절기(11월~2월) : 09:00~17:00	-	

□ 이 용 료

● 시설 이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규모	이용기간	이용료		비고
			성수기	비수기	
전통가옥 체험관	성불관(42㎡, 4~6명)	1동/1박	100,000	70,000	방2, 화장실, 온돌마루
	자비관(57㎡, 4~8명)	1동/1박	120,000	84,000	방2, 화장실, 대청마루
	해탈관(42㎡, 4~6명)	1동/1박	100,000	70,000	방2, 화장실, 온돌마루
	견성관(63㎡, 2~5명)	1동/1박	120,000	84,000	방1, 화장실, 대청마루, 누마루
	오도관(42㎡, 4~6명)	1동/1박	100,000	70,000	방2, 화장실, 온돌마루
	득도·대각관 (92㎡, 8~10명)	2동/1박	200,000	140,000	방4, 화장실, 온돌마루, 대청마루
불교문화 체험관 (단체숙박)	생활관, 사찰음식체험관	1박	·성 인: 300,000 ·초중고: 200,000		최소 15명 이상
교육관	133.65㎡	1동/4시간	50,000		

● 주말 프로그램 이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	이용기간	이용료(1인)	비고
불교문화 프로그램	개인	1박2일	40,000	
	단체 패키지 (10명이상)	1일	10,000	단체 숙박객에 한함 (시설이용료 별도)
		1박2일	20,000	
불교음식 프로그램	초등학생	12:00~14:00	4,000	
	중학생 이상	12:00~14:00	7,000	

[별표 2]

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이용료 감면율(제9조 관련)

구분	감면율(%)	비고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단,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	100	전통가옥체험관에 한함
2. 장애인(1~3급), 국가보훈대상자,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, 한부모가족	50	
3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	50	
4. 구미시민	20	
5.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20	
※ 비 고		
-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- 이용료 감면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을 따른다.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다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를 말한다. - 한부모가족이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. 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		

[별표 3]

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이용료 반환기준
(제11조 관련)

구분	유형	반환기준
이용자 귀 책	·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 ·이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	·이용료 전액 환급 ·이용료의 10% 공제후 환급 ·이용료의 30% 공제후 환급 ·이용료의 50% 공제후 환급 ·이용료의 80% 공제후 환급 ·환급불가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	·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·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	·이용료 전액 환급
운영자 귀 책	·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·이용예정일 7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·이용예정일 1일 전 취소 또는 당일 취소	·이용료 전액 환급 ·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10% 배상 ·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30% 배상 ·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50% 배상 ·이용료 환급 및 이용료의 80% 배상
※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: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 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·화산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		

[별지 서식]

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위탁 관리·운영 신청서						
신청인*	단체(법인)명칭*					
	대표자 성명*		(한자 :)	전화번호*		
	주소* (사무소 소재지)					
주요사업추진실적						
자산현황*	동산	백만원	부동산	백만원	기타	백만원
	※ 세부내역 : 붙임					
수탁운영기간	년 월 일 부터 ~ 년 월 일 까지 (년)					
<첨부서류> 1. 법인(단체)의 정관(규약)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(단,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발급하므로 제출 불필요) 2. 사업계획서 1부 3. 대표자의 주요경력(이력서) 1부 4. 임원명부						

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	
○ 목적 :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위탁 관리·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.	
○ 항목 : 필수(*) - 단체명, 성명(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생년월일, 법인등기부등본	
○ 보유 및 이용기간 :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.	
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위탁 관리·운영을 할 수 없다.	
☐ 동의 ☐ 미동의	

위와 같이 「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에 대해 위탁관리·운영코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법인 또는 단체명) : (인)

구미시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</u>	<u>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신라불교 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 을 전승·보전하기 위하여 조성 된 구미시 <u>신라불교문화초전지</u> 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라불교초전지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구미시 <u>신라불교문화초전 지</u> ”(이하 “초전지”라 한다)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 가.·나. (생략) <u>다. 스토리텔링관</u> 라.·마. (생략) 2. ~ 4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구미시 <u>신라불교초전지</u> ”--- ----- -----.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신라불교초전기념관</u> 라.·마. (현행과 같음) 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위치) 초전지는 구미시 도 개면 <u>도개리 320번지</u> 일원에 둔 다.	제3조(위치) ----- -- <u>도개다곡길 389-46</u> ----- -.
제18조(수탁자 선정) ① (생략)	제18조(수탁자 선정) ① (현행과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전지 시설 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.

제24조(설치) 시장은 초전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6조(구성) ① ② (생략)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은 부시장, 초전지를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, 위촉직은 구미시의회의원과

같음)

② -----

- 신라불교초전지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.

신라불교초전지 -----
-----.

제24조(설치) -----

----- 신라불교초전지 -----
-----.

제26조(구성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주관 국장(실장)-----

역사문화, 관광 등의 분야에서
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
시장이 위촉한다.
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「도로명주소법」

제21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,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

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

2. 각종 인·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

3.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

4.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

5.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

6.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

7.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

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발생 및 이용료 조정에 따른 세입 변동(조례 제8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조정에 따른 세입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- 세입예상액

구분	산출근거	금액(천원)	비고
합 계		45,520	
전통가옥체험	330,000원×104일	34,320	
불교음식체험	7,000원×10명×40회	2,800	
시설대관	(생활관) 300,000원×24회 (교육관) 50,000원×24회	8,400	

4. 작성자

- 문화관광담당관실 학예연구사 박근아(054-480-6612)

소관 실 · 과		문화관광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박 종 수
	담 당	장 인 수
	담 당 자	박 근 아 (480-6612)